

6.1.1 부설연구소설치및운영규정

제정 1999. 08.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요건) 본 대학교에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연구대상분야가 연구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대학발전, 대외연구비 획득 및 공동연구활성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3.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자체조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3조(설치신청)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설치목적
2. 연구소 발기인(5인 이상) 명부
3. 연구소 규정
4. 연구소 예산 및 사업계획서

제4조(설치승인)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연구원) ① 연구소 연구원은 전임연구원과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대학교 교원은 한 개 이상의 연구소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원) 연구소는 연구소장 1명, 간사 1명, 운영위원 4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소장은 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간사와 운영위원은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연구소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재정)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② 연구소의 예산은 학술용역 수익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③ 예산 및 결산은 소속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① 연구소 소장은 회계연도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폐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를 폐지할 수 있다.

1. 연구실적과 운영실태가 현저히 부진할 경우
2. 연구소의 사업이 설치목적에 위배될 경우
3. 연구소의 재정난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연구소 평가 기준표에 준하여 3년 연속 60점 이하일 경우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운영 및 관리	연구비 및 운영비 관 리	결산내역(통장, 장부, 영수증 등)	8
		연구비의 적절한 사용	7
	연구소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회의록 등)	3
		운영위원회 결과 인지	3
연구여건	인력확보(연구원 수)	연구원 수	10
	기자재 확보	연간 기자재 구입 현황(학과 기자재 공용)	6
연구업적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비 확보 실적	연구비 확보 실적	12
		1인당 평균 연구비	8
	연구 및 학술활동 실 적	연구원 1인당 연구실적	8
		전임연구원 1인당 연구실적	10
		학술활동 실적	8
		학술총서(논문집) 발간실적, 특히.실용신안 출 원	5
산학협력 추진실적	산학협력 추진실적	12	
합계			100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